

**[] 연결법인
[] 연결집단**

최저한세 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연결사업연도		연결(모)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--	--	----------	--	---------	--

1.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

① 구 분		코드	② 감면 후 세액	③ 최저한세	④ 조정감	⑤ 조정 후 세액
연결 납세 방식 적용 전	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	01				
	소득조정 금액	⑩② 익 금 산 입	02			
		⑩③ 손 금 산 입	03			
	⑩④ 조정 후 소득금액(⑩①+⑩②-⑩③)		04			
	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	⑩⑤ 준 비 금	05			
		⑩⑥ 특별상각 및 특 례자산 감가상각비	06			
	⑩⑦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(⑩④ + ⑩⑤ + ⑩⑥)		07			
	⑩⑧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익 금 불 산 입		08			
	⑩⑨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		09			
	⑩⑩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		10			
	⑩⑪ 연결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(⑩⑦ + ⑩⑧ + ⑩⑨ - ⑩⑩)		11			
연결 납세 방식 적용 후	⑩⑫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		12			
	⑩⑬ 연결수정 소득금액(⑩⑪+⑩⑫)		13			
	⑩⑭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		14			
	⑩⑮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⑩⑬ + ⑩⑭)		15			
	⑩⑯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		16			
	⑩⑰ 연 결 이 월 결 손 금		17			
	⑩⑱ 비 과 세 소 득		18			
	⑩⑲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비 과 세 소 득		19			
	⑩⑳ 차 가 감 소 득 금 액 (⑩⑯ - ⑩⑰ - ⑩⑱ + ⑩⑲)		20			
	㉑ 소 득 공 제		21			
	㉒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		22			
	㉓ 과 세 표 준 개 별 귀 속 액 (㉑ - ㉒ + ㉓)		23			
	㉔ 연 결 세 율(최저한세율)		24			
	㉕ 산 출 세 액		25			
	㉖ 감 면 세 액		26			
	㉗ 세 액 공 제		27			
	㉘ 차 감 세 액 (㉕-㉖-㉗)		28			

2.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

㉙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		㉚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			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	--	--	--

작성 방법

[연결법인]

- ②란 중 ㉔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㉕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 - ㉔ 조정 후 소득금액란: ②, ③, 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③란 중 ㉖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상의 ㉗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, ㉘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(별지 제5호서식)상의 ㉙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㉚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㉛ 준비금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②란과 ③란 중 ㉜ 기부금한도초과액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상의 ㉝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- ②란과 ③란 중 ㉞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상의 ㉟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③란 중 ㊱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상의 ㊲ 금액란 중 ㊳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㊴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③란 중 ㊵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(별지 제6호의2서식)상의 ㊶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㊷, ㊸ 및 ㊹부터 ㊻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㊼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③란 중 ㊽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상의 ㊾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㊿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㊿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상의 ㊽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㊿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 - ②란 중 ㊽ 감면세액란: 공제감면세액계산서(2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)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.
 - ④란 중 ㊽ 감면세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②란 중 ㊽ 세액공제란: 세액공제조정명세서(3)(별지 제8호서식 부표 3)상의 ㊾란(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)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, 「법인세법」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④란 중 ㊿ 세액공제란: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⑤란 중 ㊿, ㊿, ㊿, ㊿, ㊿란은 각각 ④란 중 ㊿, ㊿, ㊿, ㊿, ㊿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.
 - ⑤란 중 ㊿, ㊿란은 각각 ②란 중 ㊿, ㊿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㊿, ㊿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- ⑤란 중 ㊿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㊿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- ②란 및 ③란 중 ㊿ 연결조정 소득금액란: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에 따라 계산한 ㊿란부터 ㊿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(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"0"보다 큰 경우 "양수", "0"보다 작은 경우 "음수")
 - ②란, ③란, ⑤란의 중 ㊿ 연결조정 소득금액란: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 서식(㊿란부터 ㊿란까지)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②란, ③란, ⑤란의 중 ㊿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, ⑤란의 중 ㊿ 연결세율란: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.
 - ㊿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(4년)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'사업연도 연월'과 같이 적습니다.
- ※ 예: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.12.31. 경우,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'2011. 12.'로 적습니다.
- ㊿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㊿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~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, 2, 3, 4,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[연결집단]

※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 다만 ㊿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.

③란 중 ㊿산출세액란: ㊿란의 금액에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.

※ 최저한세 세율

구분	중소기업 (유예기간 4년 포함)	유예기간 경과 후		일반기업		
		1~3년차	4~5년차	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	과세표준 1백~1천억원 이하	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
현행	7%	8%	9%	10%	12%	17%
종전	7%	8%	9%	10%	12%	16%

* 2014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